

<보도참고자료>

제 5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3개 생보사 처리 관련>

-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현대·삼신·한일생명은 각각 계약이전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손실을 감안한 공적자금 투입의 최소화와 그 효율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임을 인정함
 □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 다만, 상기 보험사의 대주주·경영진 등 부실책임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며

- 특히 현대생명의 경우, 한국생명과 조선생명 합병인가 신청시 제출한 '합병후 증자계획서'의 미이행에 대한 책임도 함께 추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하며

- 한일생명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동일인 및 동일한 기업집단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금액 전액을 일정기간 내에 회수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정상화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가 촉구하고 동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전방식으로 처리하며 회수를 위한 관리조치를 취한다.
 가동금액의 계약화에 자체정상화를 초진하도록 관리

<수협 중앙회 처리 관련>

-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우선출자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 하는 것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3조 국민경제적 손실을 감안한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하는 정리방식으로 인정되며
 □ ~~수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함~~

-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 미처리결손금을 공적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475억원)을 지도 사업부문에서 신용사업부문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4조의 흥평한 손실분담원칙에 부합된다.

만. 지도사업부문에서 신용사업부문으로 이전한 미처리결손금(475억원)에 대하여는 신용사업부문과 지도사업부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처리하여, 동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신용사업부문의 후순위채권~~
신용사업부문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향후 지도사업부문에서 신용사업부문에 이전시킨 미처리결손금(475억원)을 지도사업부문에서 보전할 때까지 지도사업부문에서 계속 인수하도록 한다.